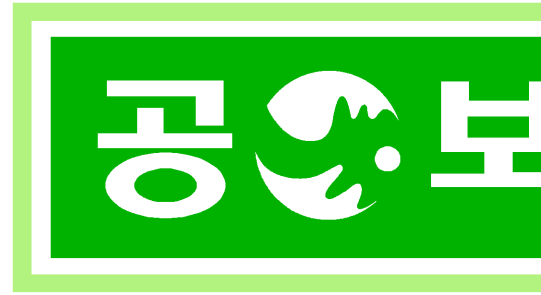


# 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공 보	기 관 의 장



제 865 호 2014. 1. 6( )

## 고 시
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4-1호[공유수면 점·사용 허가사항 고시] .....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4-2호[공유수면 점·사용 허가사항 고시] .....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4-3호[도로명주소 고시] .....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4-4호[도로명주소 폐지 고시] .....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4-5호[공유수면 점·사용 허가사항 고시] .....

## 공 고
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-1호[2014년도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자금 융자계획 공고] .....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-11호[2014년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고] .....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-12호[2014년도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수 공고] .....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-13호[2014년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] .....

회 관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: 기획홍보실 ☎241-7124 행정712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4 - 1호

## 공유수면 점·사용 허가사항 고시

「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였음을 고시합니다.

2014년 1월 6일

##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□ 고시내역

허가 년월일	허가 번호	피허가자		점용장소	면적 (㎡)	허가기간	점용목적	비 고
		주 소	성 명					
2013. 12.31.	2013 - 41	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540-1	김명곤	북구 동해안로 1540-1 일원 지선	16.0	2014.1.1. ~ 2018.12.31.	활어유통업에 따른 해수인수 펌프장 설치 운영	조건부 허 가

허가 년월일	허가 번호	피허가자		점용장소	면적 (㎡)	허가기간	점용목적	비 고
		주 소	성 명					
2013. 12.31.	2013 - 42	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540-1	김명곤	북구 동해안로 1540-1 일원 지선	18.5	2014.1.1. ~ 2018.12.31.	활어유통업에 따른 관로설치 및 해수인수	조건부 허 가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4 - 2호

## 공유수면 점·사용 허가사항 고시

「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.

2014년 1월 6일

### 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□ 고시내역

허가 년월일	허가 번호	피허가자		점용장소	면적 (㎡)	허가기간	점용목적	비 고
		주 소	성 명					
2014. 1.2.	2014 - 1	울산광역시 복구 정자1길64	이상순	복구 정자1길64 일원 지선	8.25	2014.1.1. ~ 2018.12.31.	활어수족관 운영에 따른 관로매설 및 해수인수	조건부 허 가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4 - 3호

## 도로명주소 고시

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4년 01월 06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복구 동해안로 1133외 5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(별지참조)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(☎052-241-7586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i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4. 01. 06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

순번	중점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부여사유	도로명 고시일	비고
1	울산광역시 북구 당사동 108, 111-1	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133(당사동)	2014-01-06	이지역의지형에따라도로명을부여하였다.	2009-08-20	
2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춘지구 82B 1L	울산광역시 북구 명춘18길 25(명춘동)	2014-01-06	옛지명이며현재도사용하는명칭이므로도로명을부여하였다.	2004-12-27	
3	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367-16	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598(산하동)	2014-01-06	이지역의지형에따라도로명을부여하였다.	2009-08-20	
4	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214-7	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762(어물동)	2014-01-06	이지역의지형에따라도로명을부여하였다.	2009-08-20	
5	울산광역시 북구 인입동 1425	울산광역시 북구 효암로 300-8(인입동)	2014-01-06	지명과주변의지역상반영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.	2001-03-22	지번정정
6	울산광역시 북구 영포동 128-8, 129-3, 129-6	울산광역시 북구 영포로 625(영포동)	2014-01-06	영포항개항지를연결하는도로이므로도로명을부여하였다.	2001-03-22	지번추가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4 - 4호

##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

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4년 01월 06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통샘7길 6

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 사유
통샘7길 6	2014.01.06	건축물대장 말소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(☎052-241-7586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4. 01. 06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제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등에 의거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.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4 - 5호

## 공유수면 점·사용 허가사항 고시

「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.

2014년 1월 6일

##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고시내역

허가 년월일	허가 번호	피허가자		취용장소	면적 (㎡)	허가기간	취용목적	비 고
		주 소	성 명					
2014. 1.3.	2014 - 3	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670	김말돌	북구 동해안로 1670 일원 지선	18.75	2014.1.1. ~ 2018.12.31.	활어수족관 운영에 따른 관로매설 및 해수인수	조건부 허 가

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14 -01호

## 2014년도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자금 용자계획 공고

농어업분야의 시설현대화와 규모화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4년도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자금 용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년 1월 2일

### 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#### 1. 용자대상 및 용자대상사업

○ 용자대상 : 울산광역시내 농어업인과 농어업 관련 법인체,  
생산자 단체·조직 및 공동사업장

○ 용자대상사업 및 용도

- 농어업의 소득개발을 위한 사업
-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사업
-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 사업
- 농·수산물 유통 안정을 위한 사업
- 수출작목 개발 및 농식품 육성사업
- 채소류주산단지조성에 필요한 시설자금(2014년 보조사업)

※운영자금중 행사관련 경비, 선진지견학, 용역관련 경비 등 각종 소모성 경비는 지원 불가

※ 대규모 어선(오징어채낚기, 중형기선저인망 등)에 사용되는 유류대는 제외

#### 2. 용자계획 및 용자한도

○ 용자계획 : 50억원

○ 용자한도 : 소요자금의 70%이내

- 농어업인 : 70백만원까지(시설+운영자금)
- 공동사업장 : 150백만원까지(시설+운영자금)
- 법인체, 생산자단체 조직 : 500백만원까지(시설+운영자금)



**3. 용자조건**

- 시설자금 :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
- 운영자금 : 3년 거치 일시상환

※ 대출금리 : 변동금리적용(시에서 연 6.5% 범위내에서 이차보전금 지원)

**4. 신청기간 : 2014. 1. 6 ~ 2. 6(1개월)**

**5. 신청장소 :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·면사무소, 동 주민자치센터**

**6. 구비서류 : 용자신청서, 사업계획서, 기타 필요한 서류**

※ 읍·면 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에 비치

**7. 용자대상자 선정방법**

- 사업비 신청 → 읍·면·동 자체 심의회 심의 추천  
→ 구·군 농어업·농어촌식품산업정책 심의회 심의 선정 및  
구청장·군수 추천 → 시 농어촌육성기금 운용심의회 심의 의결  
→ 시 확정 → 용자실행

**8. 용자 취급기관**

- NH농협은행 울산영업부, 울주군지부, 언양지점
- 농협중앙회 울산지역본부에서 지정하는 회원(지역)농협(15개소)

♣ 문의처

- 울산광역시 농축산과 : ☎ 229 - 2925
- 중구 경제일자리과 : ☎ 290 - 3332, 남구 지역경제과 : ☎ 226 - 5665
- 동구 해양농수산과 : ☎ 209 - 3632, 북구 농 수 산 과 : ☎ 241 - 8053
- 울주군 농업정책과 : ☎ 229 - 7452, 울주군 축수산과 : ☎ 229 - 7512
- 각 구·군의 읍·면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
- NH농협은행 울산영업부 : ☎ 259 - 0711, 울주군지부 : ☎226 - 0823
- 언양지점 : ☎263 - 2203~8, 농협중앙회 울산지역본부에서 지정하는 회원농협  
(병영☎296-3101, 중앙☎224-3260, 강동☎295-8311, 농소☎295-1621, 두북☎262-6079,  
삼남☎263-8812, 서생☎239-5303, 온산☎238-2311, 용촌☎225-0022, 범서☎211-7991  
상북☎264-9922, 언양☎264-0079, 온양☎238-4411, 청량☎268-6780, 방어진☎234-5501)

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14 - 11호

## 2014년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고

「주민투표법」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- 다 음 -

(단위 : 명)

계	내 국 인	외 국 인	재외국민
137,793	137,618	130	45

- ※ 내 국 인 : 2013년 12월 31일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 이상의 주민  
(「공직선거법」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)
- ※ 외 국 인 : 2013년 12월 31일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에 등록되어 있는 영주의 체류 자격을 갖춘 19세 이상 외국인
- ※ 재외국민 : 2013년 12월 31일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에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재외국민

2014년 1월 6일

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

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14 - 12호

## 2014년도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수 공고

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19세 이상의 주민수(「공직선거법」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)와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연서 주민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- 다 음 -

(단위 : 명)

계	19세 이상 주민총수			연서 주민수
	내국인	재외국민	외국인	
137,703	137,618	45	40	3,443

- ※ 내 국 인 : 2013년 12월 31일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 이상의 주민  
(「공직선거법」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)
- ※ 외 국 인 : 2013년 12월 31일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에 등록되어 있는 영주의 체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
- ※ 재외국민 : 2013년 12월 31일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에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재외국민
- ※ 연서주민수 : 19세이상 주민총수의 1/40

2014년 1월 6일

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 - 13호

## 2014년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 공고

「주민소환에 관한 법률」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역선거구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14. 1. 6.

##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○ 구청장

(단위 : 명)

구 분	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	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 수	최소 서명인 수	비 고
북 구	137,658	20,649		·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 수 : 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5/100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. · 선거구 안의 동 전체수가 3개 이상일 경우에는 1/3이상의 동에서 각각 최소서명인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.
구 청 장	농소1동	23,035	1,377	
	농소2동	23,689	1,377	
	농소3동	28,730	1,377	
	강동동	4,034	606	
	효문동	22,762	1,377	
	송정동	15,045	1,377	
	양정동	9,993	1,377	
	염포동	10,370	1,377	

## ○ 구의원

(단위 : 명)

구 분	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	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 수	최소 서명인 수	비 고	
구 의 원	북구 1선거구	42,114	8,423	· 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/100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. · 선거구 안의 동 전체수가 3개 이상일 경우에는 1/3이상의 동에서 각각 최소서명인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.	
	동 별	농소1동	23,035		422
	강동동	4,034	422		
	송정동	15,045	422		
	북구 2선거구	52,419	10,484	· 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/100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. · 선거구 안의 동 전체수가 2개인 경우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/100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.	
	동 별	농소2동	23,689		237
	농소3동	28,730	288		
	북구 3선거구	43,125	8,625	· 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/100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. · 선거구 안의 동 전체수가 3개 이상일 경우에는 1/3이상의 동에서 각각 최소서명인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.	
	동 별	효문동	22,762		432
	양정동	9,993	432		
염포동	10,370	432			

※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는 2013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 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하며,

1.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우리구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
(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)
2.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 
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의  
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 산정

※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 수

1. 구청장 : 청구권자 총수의 15/100이상
2. 구의원 : 청구권자 총수의 20/100이상